



제 41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검 토 보 고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18호)

2024.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상 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취지	4
2. 제정안의 필요성	5
3.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9
4. 주요 조문별 검토	11
(1)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11
(2)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	13
(3) 한우의 수급조절	15
(4) 도축·출하장려금의 지급	17
(5)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19
(6)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21
(7)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등	2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금주의원 등 27인
2. 제 안 일 : 2024. 6. 14.
3. 회 부 일 : 2024. 6. 17.

II. 제안이유

한우산업은 미국, 호주 등과의 FTA에 따른 자급률 저하, 한우농가 호수의 감소,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한·미 FTA에 따른 소고기 관세율 인하 정책으로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임.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한우의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저하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한우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안을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조절 및 도축·출하장려금, 한우농가의 저탄소 생산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 등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안 제9조).

라.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중장기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2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

제정안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한우농가가 저탄소 생산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축산분야의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것임.

같은 취지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의안번호 2116418, 이원택의원 대표발의)과 「한우산업기본법안」(의안번호 2119062, 홍문표의원 대표발의)을 병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의안번호 2126700, 대안)은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2024. 5. 28.)되어 정부에 이송(2024. 5. 28.)되었으나, 헌법 제53조¹⁾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2024. 5. 29.)되었고,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었음(2024. 5. 29.).

-
- 1) 「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2. 제정안의 필요성

한우농가는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특히, 한·미 FTA에 따른 소고기 관세율 인하 일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²⁾이고, 향후에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³⁾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또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8%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⁴⁾, 이를 위해서는 한우농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이에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한우수급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우농가의 탄소저감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법조치로 보임.

2) 한·미 FTA에 따른 연도별 소고기 수입관세율 현황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40.0	37.3	34.6	32.0	29.3	26.6	24.0	21.3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8.6	16.0	13.0	10.6	8.0	5.3	2.6	0

3)※CPTPP: 정식명칭은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이며,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임.

※전국한우협회는 CPTPP 가입 시 15년간 한육우 2조 880억원, 한우 1조 9,890억원의 생산감소를 추정하고 있음.

4) 축산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8% 감축(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4.03.15.)

다만, 이러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한우산업 관련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현재 「축산법」에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증대 및 축산물 수급 안정화 등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축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우산업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음.

반면, 현행 법령에 관련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이미 마련되어있다 하더라도, 현행 법령 체계로는 제정안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정안과 같이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양봉·말·곤충·양잠 등에 관한 개별법이 존재하는 등 품목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

둘째, 다른 축종산업과의 관계성 측면에서,

「축산법」에서 축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우산업에 대해서만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특별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다른 축종분야에서도 법 제정을 요구할 가능

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FTA로 인한 시장개방 이후 한우산업의 피해가 비교적 컸으며⁵⁾, 주요 소고기 수입국가에 대한 관세 철폐가 예정⁶⁾되어 있어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한우산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따라서 제정안의 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한우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필요성, 현행 제도 및 법률 체계와의 중복 여부,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제21대에 발의되었던 이원택의원안(의안번호 2116418)과 홍문표의원안(의안번호 2119062)에 대해서,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축산법」에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증대 및 축산물 수급 안정화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낮으며,

5) 주요 축산물 순수익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한우 번식우 마리당 순수익	-365	-1,071	-1,424	-1,465	-585	-192	266	234	214	303	518	563
한우 비육우 마리당 순수익	739	-1,166	-916	-573	-293	316	988	133	-57	-76	58	292
젖소 마리당 순수익	1,810	1,508	1,629	1,768	2,422	2,809	2,844	2,747	2,736	2,701	2,661	2,434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	40	143	9	-28	84	97	82	86	48	6	47	68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	-4.0	-1.1	-5.9	-0.3	4.1	2.3	1.8	11.8	-2.2	-1.8	2.5	19.6
육계 10마리당 순수익	3.2	1.4	0.9	0.6	1.1	0.6	0.2	1.4	1.2	1.8	0.3	0.6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농림축산식품부)

6)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 2028년부터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경우, 현행 「축산법」을 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신중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3.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제정안은 총 4장, 24조의 조문,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은 한우농가와 한우산업을 정의하고 있고, 한우산업 발전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한우산업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제2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한우농가 탄소저감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음.

제3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도축·출하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과 소규모한우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우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 수출기반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제4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한우 관련 기관·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금품 수수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표 2] 제정안의 구성

구 분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한우산업의 육성	제5조(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제7조(연구·개발) 제8조(한우산업발전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제10조(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제3장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제11조(한우의 수급조절) 제12조(도축·출하장려금) 제13조(경영비용 부담 완화) 제14조(경영개선자금 지원) 제15조(교육 지원) 제16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제17조(부산물 활용) 제18조(소비촉진) 제19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제20조(도축·가공시설 지원) 제21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제22조(수출기반조성)
제4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하에서는 제정안 입법 시 검토되어야 할 구체적인 주요 세부내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4. 주요 조문별 검토

(1)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조(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기후변화에 따른 한우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3.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4. 한우유통·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5. 한우가격의 안정화 방안 6. 한우 유전자 보존 및 국내 환경에 맞는 종모우 생산에 관한 사항 7. 「축산법」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한우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한우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9.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한우 분야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10. 그 밖에 한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제 정 안

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기본방향의 설정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과 동 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 「축산법」 제3조⁷⁾는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현행 「축산법」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우산업 발전만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7)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

제정안은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9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①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둔다. 1.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2.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3.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 4. 자원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 5. 한우의 유통 및 수출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 전국한우협회를 대표하는 사람 3. 한우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임원 6.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지원협의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한우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결정과정에 한우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 「축산법」 제4조⁸⁾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현행 「축산법」의 축산발전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보다 협의회 구성원 및 심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분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한우산업발전협의회
법적 근거	축산법 제4조	제정안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성격	심의위원회(심의)	
심의대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한우수급 관련 중장기적 정책, 적정사육두수 등에 관한 심의
위원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1.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 2. 전국한우협회를 대표하는 사람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원 5. 한우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가

동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한우산업 관련 정책의 전문성 강화, 한우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정안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협의회는 성격과 기능이 「축산법」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일부 중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8) 「축산법」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제21대에 발의되었던 이원택의원안(의안번호 2116418)과 홍문표의원안(의안번호 2119062)에 대해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⁹⁾에서 기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 위원회에 일부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¹⁰⁾

(3) 한우의 수급조절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자료를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 5년마다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한우 사육규모별로 환경·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1조(한우의 수급조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이하 “한우수급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0)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정안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협의회는 한우 관련 정책을 사전에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협의회 논의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정책결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할 때, 협의회 역할은 “심의”가 아닌 “자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제 정 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수급정책 수립시 한우 사육규모별 환경·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주도 하에 보다 중·장기적인 한우 수급 조절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한우수급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자율적인 수급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자율적 수급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수급관리를 하도록 하여, 한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우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수급에 여러 변수들이 관련되어 있어, 한우농가가 오랜 기간 한우가격 불안정에 시달려 왔음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수급조절 정책을 수립하여 한우농가의 경영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사육규모별 환경·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제21대에 발의되었던 이원택의원안(의안번호 2116418)과 홍문표의원안(의안번호 2119062)에 대해서,

현행 「축산법」 제3조11)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물의 수급

11)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조절 및 가격안정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점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¹²⁾에 따라 한우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측을 실시하여 품목별 수급동향 및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도축·출하장려금의 지급

제정안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축·출하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2조(도축·출하장려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도축·출하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한우농가가 한우의 출하 시기나 도축물량 등을 조절하도록 하여 적정한 한우수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재 도축·출하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해 지급됨에 따라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농림업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축·출하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재 정부는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한우도축 수수료를 예비비성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한우 수급조절을 위해 암소 출하촉진 및 거세우 조기 출하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축·출하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 보이거나, 지급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제21대에 발의되었던 이원택의원안(의안번호 2116418)과 홍문표의원안(의안번호 2119062)에 대해서,

현행 「축산법」 제3조¹³⁾에서 축산물의 수급조정·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이미 있으며, 「축산법」 제47조¹⁴⁾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¹⁵⁾에 따른 축산자조금을 통해서도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신중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13)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4)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1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자조금의 용도) 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5)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해 일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4조(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또는 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우농가의 소재지 및 사육두수 2. 한우의 사육 방법 3. 경영개선의 기본계획 및 개요 4. 경영개선계획의 시행 시기 및 기간 5. 그 밖에 경영개선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타당성 검토, 통보의 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경영상태가 열악한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한 한우농가에 한해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여 한우생산기반의 위축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FTA 등 시장개방 이후 한우농가의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해 보임.

다만, 현행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¹⁶⁾은 농어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및 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에 따라 소규모 축산농가나 경영위기에 처한 준전업농에 대해 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거나 농업경영회생 자금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제21대에 발의되었던 이원택의원안(의안번호 2116418)과 홍문표의원안(의안번호 2119062)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순히 한우농가의 소득금액과 부채기준에 따라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경우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다른 농업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현행 「축산법」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신중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16)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①정부는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2001년까지 1조 1천억원을 지원하며,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 거치한 후 3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9조에 따른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환 연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경우에 그가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약정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여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①정부는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6)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해 ①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③ 백신예방접종 독려 및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6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거주, 생계, 한우산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하여 소규모 한우농가의 백신예방접종 적극 독려 및 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소규모 한우농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해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한우농가의 경영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백신예방접종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 한우농가의 가축질병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소규모 한우농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수익구조가 열악하고, 축사 위생관리도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영 악화 및 전염병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해당 규정은 예산소요가 수반되므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농가”의 규모와 지원범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제21대에 발의되었던 이원택의원안(의안번호 2116418)과 홍문표의원안(의안번호 2119062)에 대해서, 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¹⁷⁾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¹⁸⁾에 따라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컨설팅과 재정지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② 축산농가 방역을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¹⁹⁾에 따라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며, 소규모 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방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7)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자조금의 용도) 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업자, 소비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중도매인등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9)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제정안은 정부가 ①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고, ②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가공시설의 구축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민간 한우유통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9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2. 한우 산지 처리의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3.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제20조(도축·가공시설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가공시설의 구축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도축장 간의 물류기능 통합과 수도권 판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산물종합물류센터의 설치 및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거점도축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판로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의 한우유통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최근 사료값 폭등 등 생산비 상승과 한우 공급량 증가에 따른 도매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축산농가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한우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한우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품질·유통구조개선과 도축·가

공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간 한우유통업체의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조문 내용에 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고 일부 지원규정은 관련 법률에서 기지원되고 있으므로 수정·보완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제21대에 발의되었던 이원택의원안(의안번호 2116418)과 홍문표의원안(의안번호 2119062)에 대해서,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등에 따라 축산물의 품질제고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설립·운영²⁰⁾하고 있으며,

20)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자가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①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④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축산물 등급판정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5.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6. 「가축 및 축산물

아울러, 축산물의 규격 및 품질표시 기준 등 축산물 품질 제고 전반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법 제정 필요성이 낮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9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